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2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이종배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일, 김형재, 김혜영,
김혜지, 남창진, 문성호,
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
옥재은, 이경숙, 이병윤,
이상욱, 이종환, 최민규,
최진혁, 최호정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.
- 차량을 이용한 숙박·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 관련 규정 중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숙박·취사 등의 행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2조제1항~3항).
- 나. 시장이 특별관리지역 내의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제4항).

- 다. 시장이 구청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2조제5항).
- 라. 관광종사원 교육 지원 범위에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추가 규정함(안 제13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”을 “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관광객으로 인하여”를 “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”로, “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”을 “생활환경을 해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차량을 이용한 숙박·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출입, 주차,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
②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특별관리지역의 위치, 면적
2. 특별관리지역 지정·변경·해제 일시

3. 특별관리지역 지정·변경·해제 사유

4.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, 편의시설 설치, 이용수칙 고지, 이용료 징수,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48조의3제7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3조 중 “업무능력”을 “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)</p> <p>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거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<u>구청장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관광객으로 인하여</u> 주민의 평온한 <u>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</u>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</p> <p>2. <u>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</p>	<p>제12조(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--- 생활환경을 해칠</u> ----- --</p> <p>2. <u>차량을 이용한 숙박·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</u>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출입, 주차,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</p> <p>② 시장은 <u>법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</u> 특별관리지역</p>

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
2.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,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 운영

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1. 특별관리지역의 위치, 면적
2. 특별관리지역 지정·변경·해제 일시
3. 특별관리지역 지정·변경·해제 사유
4.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, 편의시설 설치, 이용수칙 고지, 이용료 징수,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3. 특별관리지역 개선사업

<신 설>

<신 설>

제13조(관광종사원 교육) 시장은
법 제38조에 따라 관광종사원의
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
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
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
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
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48조의3
제7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4
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
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관리지
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
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
수 있다.

제13조(관광종사원 교육) -----

---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
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
전문성 -----.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이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또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 관련 규정 중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본 안 제12조(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)제5항1)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관련부서(관광정책과) 및 관련기관(종로구청) 확인결과 기추진 사업(붙임1, 붙임2 참고)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본 안 제13조(관광종사원 교육)²⁾는 현행 같은 조례 제13조(관광종사원 교육)의 “업무능력”을 “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”으로 구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계분석관	손제승
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시장이 구청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

2) 기추진사업 : [관광체육국 관광체육과]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- 관광산업종사자 안전·안심관광 직무교육사업 200,000천원

[붙임1] 2024년 서울시 서울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예산 (본 개정안 제12조제5항 관련)

□ 사업목적

- 로컬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숨겨진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관광객 분산 도모
- 주거지역 관광명소 등 특정 지역의 오버투어리즘 현상 해소 및 예방·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지역관광 기반 조성

□ 사업내용

-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 지원
 - 사업기간 : 2024. 1월 ~ 12월
 - 사업내용 :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는 주거지역 지원
 - 자치구 공모를 통해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대책 시행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숨겨진 지역관광 자원 발굴 및 상품화를 통해 관광객의 서울 곳곳의 명소 방문을 유도하여 관광객 분산 및 서울 지역 균형 발전 도모
- 주거지역 관광명소 등 특정 지역의 오버투어리즘 현상을 예방·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기반 조성

□ 산출근거

(단위: 천원)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개선 지원 200,000,000원*1개 자치구	= 200,000

자료 : 2024년 서울시 관광체육국 예산설명서 발취

[붙임2] 2024년 종로구 특별관리지역 관련 (본 개정안 제12조제5항 관련)

□ 종로구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예산

- 사업예산 260,182천원
 - 시비 100,000천원 / 구비 160,182천원
- 에티켓안내관 정비 / 특별관리지역 안내홍보물 제작 / 특별관리지역 모니터링 솔루션 구매 등

사업명	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 기반 구축
사업내용	○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추진 대책 ○ 에티켓 홍보물 제작, 안내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
사업기간	2024년01월01일 ~ 2028년12월31일
지원형태	직접수행
지원조건	○ 시비 50%, 구비 50%
시행주체	관광과(관광정책팀)

자료 : 2024년 종로구 예산서 및 예산 성과계획서 발췌